

2023년 상반기 보조금 지원시설 종합감사(1차) 결과 공개

[2023년 연수구 청원공모전 당선작]



연 수 구
감 사 실

2023년 상반기 보조금 지원시설 종합감사(1차) 결과

I

감사개요

1.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감사규칙」 제5조(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 2023년 상반기 보조금 지원시설 종합감사 실시계획 [감사실-507(2023.01.18.)호]

2. 감사대상기관 및 범위

- 감 사 반 : 감사담당 등 4명
- 감사대상 및 범위

감사대상	감사일정	감사범위
선학종합사회복지관	2023. 3. 27. ~ 3. 30. (4일)	2019. 8. 1. ~ 2022. 12. 31. 추진사업 전반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 4. 3. ~ 4. 6. (4일)	2019. 10. 14. ~ 2022. 12. 31. 추진사업 전반

3. 중점감사 사항

- 시설운영관리
- 인사·복무
- 예산·회계, 계약
- 사업추진내용 등

II

지적사항

제목	1. 제규정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복무규칙(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휴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사규칙에 채용계획, 시험의 전형, 채용서류 등 투명한 직원채용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처분 요구 사항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등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법령, 조례, 운영 지침 등 상위 규정에 맞도록 제·개정하도록 “개선요구” 조치
제목	2. 프로그램 강사 채용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운영규정 상 명시된 강사 채용절차 미 준수, 채용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강사를 채용함.
처분 요구 사항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제목	3. 종사자 범죄 및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미실시
위법 부당 내용	사업 대상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종사자(프로그램 강사) 채용 시 범죄 및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음.
처분 요구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및 「아동복지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제목	4.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직원채용 시 내부위원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 인사위원회 개최 시 회의자료나 심의안건 등에 대한 자료 없이 업무 총괄담당자이자 인사위원회 위원인 내부 직원의 구두상 설명으로만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별도의 심의의결서 없이 회의록에 출석위원 서명만으로만 같음하였음.
처분 요구 사항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 조치 인사위원회 개최 시 회의자료(회의록, 심의의결서 등) 작성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제목	5. 직원 채용절차 및 채용서류 보관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직원채용 시 채용계획 수립 누락 채용시험 시 임의적인 가산점 운영(사전에 가점사항을 공고 없이 가점제도를 운영)

내용	직원 채용 시 응시자의 전형별 평가결과 서류 등 채용서류를 보관함에 있어 전 직원이 함께 공람하는 내부분서와 함께 편철·보관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인사위원회 내부 회의문서관리를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조치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채용서류 별도 보관 등 비공개 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제목	6.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구청 해당부서에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시 지원대상자명을 공개함으로써 공개하지 말아야 할 민감정보를 노출함.
처분 요구 사항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및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제목	7.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프로그램 강사 채용 시 강사 이력서 등 서류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였으며,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생년월일로 수정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히 함.
처분 요구 사항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제목	8.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운영규정에 명시된 위원의 임기(3년)대로 위촉하지 않았고, 임기가 만료된 이후 재위촉하는 절차를 누락한 채로 위원으로 활동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구청 해당부서에 운영위원 위촉 보고 시 위원의 임기를 누락한 채 보고함.
처분 요구 사항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제목	9. 사회교육강사 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운영규정 상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분기별로 강의를 시작하기 7일 전에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강사 채용 시 강의계획서를 제출받거나, 반기별로 제출받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사회교육강사를 관리하였음.
처분 요구 사항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제목	10. 예산편성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본예산 및 추경 편성 시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해야 했으나, 예산편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확정된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했으나, 제출기한을 지연하거나 제출을 누락함.
처분 요구 사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제목	11.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수입원이 수입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복지관 북카페 내 커피숍 운영 수입금 수납을 짧게는 1일, 길게는 14일 지연하여 예입함.
처분 요구 사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제목	12. 회계연도 독립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세출예산의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예산을 집행함.
처분 요구 사항	「지방회계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제목	13. 사전품의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예산 지출에 대한 사전 품의없이 원인행위 후 품의와 지출행위를 함.
처분 요구 사항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제목	14.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회의비와 기관운영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용용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집행품의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등 증빙을 위한 공문 등을 첨부하지 않았음. 종사자 명절선물 구입 시 명절선물 수령 확인서 등 물품 수령에 대한 증빙자료가 누락함.

처분 요구 사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제목	15. 지출품의 및 결의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일부 지출 품의서에 집행목적 누락, 산출내역서 및 사업계획서 미첨부, 지출 결의 시 행사 물품 구입 지출에 대한 행사 사진을 첨부한 사업결과보고서 등을 증빙서류에 첨부하지 않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안내」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법 규정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지문인식이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객관적 자료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매월 연장근로수당 지출 결의 시 대상자의 시간외명령서 및 연장근로시간 증빙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지출 집행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처분 요구 사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안내」의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제목	16. 직책보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에 따라 자체 운영규정에 직급별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했으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직책보조비를 지급하였음.
처분 요구 사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에 맞게끔 자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팀장 직급 보조비를 지급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
제목	17. 계약 및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
위법 부당 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발주처 및 계약보증금을 미기재, 지체상금을 미기재(또는 오기재) 하였으며, 계약 건별로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공사·물품)계약일반조건사항, 계약보증이행증권 및 수입인지(1천만원 이상),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구비서류를 누락하였으며, 계약의 대가 지급 시 하자보수보증서(공사),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1천만원 이상),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았음. 「지방계약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사 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완료여부의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금액을 지출하여야 함에도 준공계 및 준공검사조서를 받지 않고 계약금액을 지출하였음.
처분 요구 사항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